

오산시의회 공고 제2021-1호

오산시의회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1년 1월 15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[김명철 의원 발의]

1. 제안이유

- 심의중인 안전과 오산시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시책 및 관심사항 등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의원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한 자유발언의 시간을 5분에서 7분으로 연장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본회의 자유발언 시간을 5분 이내에서 7분 이내로 연장함(안 제28조의2).

3. 규칙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1년 1월 22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447-701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23, · 팩 스 : 031)375-2875
 - 전자메일 : pk1121@korea.kr

오산시의회 자치법규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견제출자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규칙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

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김명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제8-436호
----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년 1월 15일

발의의원 : 김명철 의원

찬성의원 : 이상복, 이성혁, 한은경 의원

제안이유

- 심의중인 안건과 오산시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시책 및 관심사항 등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의원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한 자유발언의 시간을 5분에서 7분으로 연장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가. 본회의 자유발언 시간을 5분 이내에서 7분 이내로 연장함(안 제28조의2).

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2의 제목“(5분 자유발언)”을“(7분 자유발언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5분 이내”를 “7분 이내”로, 같은 항 부터 제3항까지 중 “5분”을 각각 “7분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8조의2(5분 자유발언) 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시에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<u>5분 이내</u>의 발언(이하 “5분 자유발언”이라 한다)을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5분</u>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발언 순서는 신청 순서와 같다.</p> <p>③ <u>5분</u> 자유발언은 제1항에 정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	<p>제28조의2(7분 자유발언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7분 이내</u>-----<u>7</u> <u>분</u> ----- -----.</p> <p>② <u>7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③ <u>7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